



제417회 국회(임시회)
제1차 국토교통위원회

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검 토 보 고

■ 이용선의원 대표발의(의안번호 제2200853호)

2024. 8.

국 토 교 통 위 원 회
수석전문위원 박재유

목 차

I . 이용선의원 대표발의(제2200853호)	1
1. 제안경위	1
2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	1
3. 검토의견	2
가. 산업단지개발계획의 내용에 신·재생에너지의 공급률과 활용계획 추가(안 제6조제5항제6호의2 신설)	2

I. 이용선의원 대표발의(제2200853호)

1. 제안경위

가. 발 의 자 : 이용선의원 등 12인

나. 발 의 일 : 2024. 6. 24.

다. 회 부 일 : 2024. 6. 25.

2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산업단지를 지정하거나 지정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산업단지개발계획을 작성하도록 하고 있고, 해당 계획 작성 시 포함하여야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직접 법률에 규정하고 있음.

그런데 최근 탄소중립 및 녹색성장의 추세에 따라 신·재생에너지의 활용에 대한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으며 온실가스 배출량과 에너지 사용량이 많은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특히 신·재생에너지의 도입 및 활용이 시급함에도 불구하고 현행 산업단지개발계획의 내용에는 해당 내용이 반영되어 있지 않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.

이에 산업단지개발계획 작성 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의 공급률과 활용계획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산업단지 내 신·재생에너지 발전을 촉진하고 탄소중립화, 녹색성장 및 국가경쟁력 제고에 이바지하려는 것임(안 제6조제5항제6호의2 신설).

3. 검토의견

가. 산업단지개발계획의 내용에 신·재생에너지의 공급률과 활용계획 추가(안 제6조제5항제6호의2 신설)

현행	개정안
제6조(국가산업단지의 지정) ① ~ ④ (생략)	제6조(국가산업단지의 지정) ① ~ ④ (현행과 같음)
⑤ 제3항에 따른 산업단지개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 다만, 산업단지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부득이한 경우에는 산업단지를 지정한 후에 제3호의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를 지정하거나 또는 제8호의 사항을 정하여 이를 산업단지개발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다.	⑤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
1. ~ 6. (생략)	1. ~ 6. (현행과 같음)
<u><신설></u>	<u>6의2. 「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법」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의 공급률과 활용계획</u>
7. ~ 9. (생략)	7. ~ 9. (현행과 같음)
⑥ ~ ⑧ (생략)	⑥ ~ ⑧ (현행과 같음)

※ 시행일 :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

※ 국가산업단지의 지정에 관한 적용례 : 개정규정은 시행 이후 산업단지개발계획을 작성하는 경우부터 적용

개정안은 산업단지개발계획에 「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법」에 따른 신에너지·재생에너지¹⁾의 공급률 및 활용계획을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.

국토교통부장관 및 시·도지사 등이 국가산업단지·일반산업단지·도시첨단산업단지·농공단지를 지정하려면 산업단지의 명칭·위치·면적, 토지이용계획 등이 포함된 산업단지개발계획²⁾을 수립하여야 하는

1) 「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법」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신에너지”란 기존의 화석연료를 변환시켜 이용하거나 수소·산소 등의 화학 반응을 통하여 전기 또는 열을 이용하는 에너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.

가. 수소에너지

나. 연료전지

다. 석탄을 액화·가스화한 에너지 및 중질잔사유(重質殘渣油)를 가스화한 에너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범위에 해당하는 에너지

라. 그 밖에 석유·석탄·원자력 또는 천연가스가 아닌 에너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

2. “재생에너지”란 햇빛·물·지열(地熱)·강수(降水)·생물유기체 등을 포함하는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변환시켜 이용하는 에너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.

가. 태양에너지

나. 풍력

다. 수력

라. 해양에너지

마. 지열에너지

바. 생물자원을 변환시켜 이용하는 바이오에너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범위에 해당하는 에너지

사. 폐기물에너지(비재생폐기물로부터 생산된 것은 제외한다)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범위에 해당하는 에너지

아. 그 밖에 석유·석탄·원자력 또는 천연가스가 아닌 에너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

「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법 시행령」

제2조(석탄을 액화·가스화한 에너지 등의 기준 및 범위) ④ 법 제2조제2호아목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”란 별표 1 제5호에 따른 수열에너지를 말한다.

2) 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」

제6조(국가산업단지의 지정)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국가산업단지를 지정하려면 산업단지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시·도지사의 의견을 듣고,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.

⑤ 제3항에 따른 산업단지개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산업단지의 명칭·위치 및 면적

2. 산업단지의 지정 목적

3.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(이하 “사업시행자”라 한다)

4. 사업 시행방법

5. 주요 유치업종 또는 제한업종

6.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기반시설계획

데, 현행법은 동 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으로 신·재생에너지의 공급률 및 활용계획과 관련된 사항을 명시하고 있지 않음.

최근 전세계적으로 ESG(Environmental·Social·Governance) 경영, RE100³⁾ 등이 화두가 되고 2023년 3월 정부가 발표한 「제1차 국가 탄소중립·녹색성장 기본계획(2023~2042)」에도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(2018년 대비 △40%) 달성을 위한 정책과제⁴⁾ 등이 제시되었음.

산업단지가 온실가스 배출량과 에너지 사용량이 많다는 점⁵⁾을 고려할 때, 산업단지개발계획에 신·재생에너지의 공급률 및 조달계획을 포함시켜 신·재생에너지 활용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낮추는 산업단지를 조성하려는 개정안은 타당한 측면이 있음.

한편, 국토교통부는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현행법에 따라 산

7. 재원(財源) 조달계획

8. 수용·사용할 토지·건축물 또는 그 밖의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세부 목록

9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

제7조(일반산업단지의 지정) ⑥ 제2항에 따른 산업단지개발계획에 관하여는 제6조제5항부터 제8항까지를 준용한다.

제7조의2(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) ⑥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산업단지개발계획에 관하여는 제6조제5항부터 제8항까지를 준용하고, 제4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관하여는 제7조제7항을 준용한다.

제8조(농공단지의 지정) ④ 제2항에 따른 산업단지개발계획에 관하여는 제6조제5항부터 제8항까지를 준용한다.

3)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의 100%를 재생에너지로 사용하겠다는 글로벌 캠페인임.

4) 10대(전환·산업·건물·수송·농축수산, 폐기물 등) 부문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 정책과제 37개를 마련함.

5) 산업단지는 우리나라 산업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의 76.8%, 에너지 사용량의 83.1%를 차지하고 있음(한국산업단지공단, 「산업입지 통권75호」, 2022. 4., 50면 참조).

업단지개발계획에 포함되는 기반시설계획(법 제6조제5항제6호)을 통해서도 에너지공급 방안 등이 포함될 수 있으며, 산업단지개발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사업시행자(한국주택토지공사 등)가 신·재생에너지 공급률과 활용계획까지 직접 작성하기에는 제한적인 점 등을 고려하여 입법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.

문 의 처
02)6788-5574